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①법	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①
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(이	
하 "학칙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	
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학생 포상, 징계, 교육목적상 필	7
요한 지도 <u>방법</u> 및 학교 내 교육	<u>방법, 학업 중단 예방</u>
•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	
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	
8. • 9. (생 략)	8.•9. (현행과 같음)
10. <u>기타</u>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	10. <u>그 밖에</u>
② 삭 제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	④ <u>제1항제7호(학업 중</u>
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	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-
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, 학	
부모, 교원의 의견을 듣고, 그 의견	
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노력해야

부 칙

제2조(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학칙은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학칙으로 본다. 다만,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.